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 호

2. 시행일 : 2008. 02. 12.

3.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내용

(1) 직관 클래스 신설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 14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(생 략) 1.~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~⑤ (생 략)	제 14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직관 클래스 수익증권 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 (생 략) 1.~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~③ (생 략)	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직관 클래스 수익증권 :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①~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~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직관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 나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
<u><부칙 신설></u>	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8 년 2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(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<u>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약관 적용 특례</u>)

①제 1 조제 1 항 중 "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, 수익자 및 판매회사"를 "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 및 수익자"로 한다.

②제 7 조 중 "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, 판매회사"를 "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"로 한다.

③제 14 조제 2 항, 제 15 조제 1 항, 제 18 조제 5 항 및 제 6 항, 제 20 조제 2 항, 제 22 조제 1 항 및 제 2 항, 제 23 조제 3 항, 제 44 조제 2 항, 제 45 조제 2 항, 제 46 조, 제 49 조제 4 항, 제 51 조제 5 항 및 제 6 항 중 "판매회사"를 "자산운용회사"로 한다.

④제 16 조제 1 항 중 "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"를 "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산운용회사에"로 한다.

⑤제 19 조제 4 항 중 "자산운용회사·판매회사의 영업소"를 "자산운용회사의 영업소"로 한다.

⑥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=====

.제 21 조(수익증권의 환매)

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산운용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운용회사가 해산·허가취소,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(이하 "해산등"이라 한다)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62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.

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=====

⑦제 22 조제 3 항 및 제 23 조제 1 항 중 "판매회사(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)"를 "자산운용회사(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회사를 말한다)"로 한다.

⑧제 26 조제 1 항, 제 5 항 및 제 6 항 중 "수익자 및 판매회사"를 "수익자"로 한다.

⑨제 27 조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=====

⑥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및 수탁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.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=====</p> <p>⑩제 40 조제 1 항 중 "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운용회사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,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"를 "<u>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운용회사보수와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</u>"로 한다.</p> <p>⑪제 45 조제 1 항 중 "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(이하 "상환금등"이라 한다)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"를 "<u>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(이하 "상환금등"이라 한다)을 받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u>"로 한다.</p> <p>⑫제 49 조제 3 항 중 "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"를 "<u>자산운용회사</u>"로 한다.</p> <p>⑬제 51 조제 1 항 중 "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"를 "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"로 한다.</p> <p>⑭제 51 조제 2 항 중 "자산운용회사·판매회사"를 "자산운용회사"로 한다.</p> <p>⑮제 5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=====</p> <p><u>제 54 조(관할법원)</u></p> <p>①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.</p> <p>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<u>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 본점 소재지</u>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3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<u>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 본점 소재지</u>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=====</p>
--	---

(2) 판매사 추가 : 광주은행

